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36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박용갑・이해식・조승래 윤준병・김영환・이정문 장철민・염태영・차규근 서삼석・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기상·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